

국어문화원 규정

1972. 11. 25. 제정

2018. 6. 20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문화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. <개정 2016.6.16.>

제3조(사업) 문화원은 국어문화에 관련된 자료 수집·정리 및 보급과 연구를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어문화 및 관련 학문 영역 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·정리 및 보급
2. 문화원 내외를 통한 공동연구 실시
3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, 강좌 등의 개최
4. 연구서 및 조사보고서의 출판
5. 국내외 여러 연구단체와의 제휴 및 공동연구
6. 글쓰기, 말하기,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 등 한국어 상담
7.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8. 이주민, 지역민, 고령퇴직자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강사 연수 사업
9. 한국어 자료 및 국어문화 자료 구축과 보급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
10. 기타 문화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4조(원장·부원장) 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원장과 부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6.16.>

③ 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문화원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6.16.>

제5조(조직) ① 문화원에 국어학연구실, 고전문학연구실, 현대문학연구실, 국어문화보급실, 한국어상담소 및 행정실을 둔다.

- ② 국어학연구실은 국어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고전문학연구실은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현대문학연구실은 현대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국어문화보급실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해외 보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⑥ 한국어상담소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상담 및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,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, 한국어 강사를 위한 연수 및 교육 사업을 담당한다.
- ⑦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6조(실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

2016.6.16.>

- ② 각 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연구위원 등) ① 문화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
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-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의
제청으로 운영위원회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6.16.>

-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
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연구원 등) ① 문화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
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-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.

-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9조(행정인력) ① 문화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
다. <개정 2016.6.16.>

-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문화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어문화
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, 원장,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
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. <개정 2012.12.
31., 2016.6.16.>

-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
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문화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문화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-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
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6.16.>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3. 운영위원 명단

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문화원의 경비는 문화원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문화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문화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부칙 (1972. 11. 25. 제정)

이 규정은 197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981. 8. 17. 개정)

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982. 3. 17. 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한국어문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 (2003. 2. 7.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8. 10. 21.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소속 변경에 관한 내용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2. 12. 31. 개정)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6. 16. 개정)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